

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2일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2년 3월 12일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5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3.22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세무1과장 김선덕)

□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는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(안 제5조의 2)
- 나. 감염병 진료를 위한 가설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조항 신설(안 제9조의 4)
- 다.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제84조, 제92조의2
- 2) 「지방세법」 제9조, 104조, 10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 결과(2022. 2. 3. ~ 2022. 2. 23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최광호)

가. 개정 취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라,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5조2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¹⁾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

1) 우리 구 감면대상 및 금액[2021년 기준]

- 감면대상: 임야 등 252필지 872,878㎡(개화, 봉제, 증미산 등)
- 감면금액: 139,933천원

- 안 제9조4에서 ‘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’ 조항을 신설하여 공익 목적의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²⁾함
-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세의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³⁾하고자 함

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

2) 재산세 감면율: 100%(기존 의대법인의 경우 50%), 우리 구 해당 가설건축물 없음

※ 「지방세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09조제3항제3호: 존치기간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은 취득세·재산세가 비과세되나, 1년 초과 시 과세대상으로 전환

3) 세액공제 금액

구 분	현 행	개정안	비고
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 신청	150원	250원	고지서 1건당 100원 인상
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	500원	600원	

※ 우리 구 2021년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현황

과세건수	전자고지	전자고지율	세액공제건수	세액공제액	비고
1,073,075	253,331	23.6%	209,365건	41,101,710원	22백만원 증가예상

- 도심 속 휴식 공간 확보 및 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⁴⁾으로 지정된 토지,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국민의 재산권 침해요소를 완화하고
- 공익 목적의 선별진료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,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가설 건축물이 과세 대상으로 전환 시 의료기관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- 또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로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증진되고 세금 체납 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정비는 공익적 이유로 지방세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도모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.

4) **도시자연공원구역**: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에 대하여, 헌법재판소 결정 및 관련 법률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제가 도입되어, 기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'도시공원' 결정 효력이 상실됨(2020.7.1.) 이에 대처하여 서울시는 실효위기의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 중 양호한 산림이 있는 지역 등을 "도시자연공원구역"으로 변경·지정함(2020.6.29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한다)를 할 수 있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<신설 2021.6.8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제84조(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, 지상건축물, 「지방세법」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(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)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. <개정 2021.12.28.>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(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③ 「철도안전법」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.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전자송달 방식"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이체 방식"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<개정 2021.12.28.>
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6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

□ 지방세법

제9조(비과세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, 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"지방자치단체조합"이라 한다),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(이하 이 항에서 "국가등"이라

한다)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“귀속등”이라 한다)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1.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·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

2.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

③ 신탁(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)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.

1.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

2.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

3.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

④ 「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또는 「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」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·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⑤ 임시홍행장, 공사현장사무소 등(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)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.

⑥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)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1.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·화재·교통사고·폐차·차령초과(車齡超過)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
2.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차함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된 차량

제104조(정의)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토지"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.
2. "건축물"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.
3. "주택"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.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.
4. "항공기"란 제6조 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.
5. "선박"이란 제6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.
6. 삭제

제109조(비과세) 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지방자치단체조합,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

1.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
2.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

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(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

1.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
2.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

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(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

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(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)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·하천·제방·구거·유지 및 묘지
2. 「산림보호법」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,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
3.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
4. 비상재해구조용, 무료도선용, 선교(船橋)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(傳馬用)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
5.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